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 어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761호(2024.10.22. 일부개정, 2025.4.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국어기본법) 근거 조항 변경(영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나. 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 변경(영 별지 제3호 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

대통령령 제 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국 어 교 원 자 격 증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

번 호
Certificate Number

이 름
Full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자 격
Qualification Grade

자 격 취 득 일
Date of Qualification

「국어기본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
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Korean
Language Teach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3) of 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직인

1. 검정 종별: 무시험검정
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 호 목 자격기준
3. 수여 조건: 해당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 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 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3항----- ----- -----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 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 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 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3 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에 관한 사무 2. (생략)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1. 법 제19조제3항 ----- ----- -----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532